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교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강탄산업(김우기)

나. 전화번호 : 031-796-7287

2. 명칭 : 벽체와 기초저판을 프리스트레스 공법으로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옹벽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기존의 프리캐스트 옹벽이 운반, 취급상의 문제로 벽체와 기초저판을 판상형으로 별도 제작하여 강관이나 콘크리트 부벽으로 각각의 판을 연결함으로써, 구조적 취약부가 발생하고 부벽으로 인해 뒷채움 다짐이 매우 불리하다.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뒷굽 기초를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프리스트레싱 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앞굽 기초를 강결하므로써 비교적 규모가 큰 역T형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1.5~7.0m)을 강결체로 완성하면서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이다.

<범위>

높이 1.5m~7.0m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굽을 프리스트레스트력으로 강결 완성하는 PC옹벽 공법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프리스트레스트구조를 결합한 복합 구조체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와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상황실 명칭을 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에 경비국 하부조직인 상황센터 및 상황센터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하며, 제20조 및 제22조에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상황실 및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

나. 제36조 2항에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정원을 기존 2명(9급 2명)에서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변경

다. 별표9 평가대상 조직에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 삭제

라.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